

202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1. 24.(수)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이현수 위원, 노승용 위원, 전다운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 : 서울시내버스회사 대진여객의 연비절감 포상금 관련 ○ 2024-3 :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시설 관련 비위조사 내용 및 조치에 대한 정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 : 부분인용 ○ 2024-3 : 기각

1. [의안번호 2024-2] : 서울시내버스회사 대진여객의 연비절감

포상금 관련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2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연료절감 성과배분금액, 운수회사하고 종사자 사이에 배분비율에 관한 건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청구인들이 공개된 사항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아마 이 공문은 지금 공개가 된 게 맞습니까?

○ 000 주무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정보공개시스템상에 등록할 때 당초에 공문 부분 중에서 일부분만 비공개를 하고, 공문 중에는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시스템상에 누락이 있어서 청구인에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개가 안 된 상황이군요? 내부적으로는 공개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는데.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원래 애초에 이 자료를 보시면 엑셀파일 말고 한글파일 5번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비공개 자료.

○ 000 주무관

공문이요?

○ 000 위원장

공문입니다. 이 공문 보시면 여기 성과배분액에서 여기 회사하고 지급예정일 이거는 블라인드가 돼서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지금 공개, 비공개 처리를 한 특정회사 성과배분액인데요. 이 운수업체는 아닌 다른 업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결정을 한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렇군요. 특정회사 그 부분은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시내버스 회사 그 부분은 지금 전체 회사입니까?

○ 000 주무관

이 부분은 그런데 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공개로 나가고요.

지금 최소 50% 이상, 3번에 지금 청구인께서 공금해하시는 거는 비율을 공금해하시는 거라 운수종사자에게 최소 50% 이상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회사에 지급된 돈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50% 이상인데 회사 내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포상금 형태가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이 운수종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회사에 해당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성과배분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 000 위원장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은 다 공개가 됐습니까?

○ 000 주무관

아니요.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 담당부서 검토사항으로는 버스 회사의 성과금 내역은 공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000 위원장

회사에 지원된 내역은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상으로는 성과배분액은 다른 회사와 관련된 거라 이것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비율인데요. 회사 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비율을 얼마나 책정했는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는?

○ 000 주무관

버스회사 측에서 아마 공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개 요청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장

그렇지만 이 공문상으로는 서울시도 일종의 행정지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권고든 행정지도든 이렇게 하는 것을 규정을 공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 000 주무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시면 혹시 이 비율을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의무공개니까 다 지금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투명하게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줬는데 내부적으로는 몇 프로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이걸 알려줘야, 그 운수종사자들이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이걸 알려주는 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 000 주무관

아니요. 문제될 소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걸 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엑셀파일도 사실은 아까 그런 취지라면 다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이 회사에 관한 이 엑셀파일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엑셀파일도 공개하면 되고.

공문상으로 여기 나, 다 이것만 문제인데요. 이미 지급예정일은 11월 6일에 그러니까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성과배분액 나 번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 점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끝났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000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에너지 절감장치 도입을 해서 에너지가 많이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로 버스회사한테 포상금을 준다. 결국 이 정보공개에 들어오게 된 맥락이 대중교통 운송수단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정보공개가 청구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사실 시내버스 회사가 이런 버스운송을 하면서 연료절감장치를 달지 안 달지, 단다면 어떤 회사 걸 달지 뭐 이런 게 버스 책임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을 이용하게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어떤 특정 회사 연료절감장치를 달면 포상금을 주고, 또 그 포상금을 특정 버스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사를 제외한 운송종사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근거 법률이 뭐가 있나요?

이게 전혀 근거 법률 없이 뭐 서울시 조례라도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나 이런 법령의 근거 없이 그냥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런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왜 생기게 되었냐 하면 말씀해 주신 공문에 성과배분 지급통지를 보면 큰 액수를 받아서 각 회사의 운수종사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누어줄 때의 기준하고 대상, 그러니까 지급기준 및 대상을 공개하라. 그런데 그 공개가 의무공개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이 의무공개라는 말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적근거가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님 업무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는데 혹시 알려주실 방법이 좀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주무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 000 위원장

어제 업무를 받고 이걸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부적인 뭔가 지침이나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법령에 근거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내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요?

○ 000 주무관

분명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조례인지 아니면 지침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일단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갖 업무를 맡으셔서 답변하기가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일단 잠깐 나가주시고 저희가 의결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급부행정 일환이기는 한데요. 근거가 명확히 좀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 회사에 대한 지원금은 그게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

고, 특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셀 내용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고, 얼마가 지원된다는 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그게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더더구나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 포상금 비율은 일단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상금 비율이 책정돼 있는지 그 회사 내의 문제인데요. 이거 의무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일단 잠깐 남겨놓고요.

저는 공문상으로는 3의 나 부분의 성과배분액 이거 전체는 타 회사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특정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일지 하는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어쨌든 성과배분액과 관련된 이 부분을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도 이게 꼭 비공개 대상인가 하는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총액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특정한 개인의 어떤 회사의 영업상 비밀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회사 이 부분이 굳이 말하자면 하는 건데 이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그거는 투명하게 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공문은 다, 굳이 제안한다면 특정회사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지도 서울시의 감독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받아서 지원을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옳다고.

여기 의무공개 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굳이 이거를 영업상 비밀로 하려면 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무슨 훼손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더라도, 영업상 비밀 개념을 넓게 하더라도 이거는 비공개 대상 범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게 맞고, 문제가 된다면 이 특정회사 이 부분, 이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그 공문에서 다 공개를 하는데 특정회사 부분만 비공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특정이 돼서요.

반면 밑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는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회사 전부를 말하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과거에 어떤 회사 전체적으로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하는 기사 내용도 있는 걸 보면 공익성이 큰, 널리 오히려 알려야 되는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특정회사 부분만 비공개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

저도 000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회사 부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의무공개 사항이니까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의무공개 사항이면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다 공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특정회사 부분이나 나 부분 비공개 의견이시면 저도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특정회사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된 내용을 발표를 할 텐데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가 부분인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공문 중에 3번에 나에 보시면 성과배분액 특정회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나머

지는 다 공개입니다.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특정회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엑셀파일하고 그다음에 공문 내용도 다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등을 의무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함께 청구인에게 알려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령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원래는 그 지급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3] :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시설 관련 비위조사

내용 및 조치에 대한 정보

○ 000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3호 조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송과구청하고 시설 쪽에 감사내용 처
분한 여덟 가지 문서에 대한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해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청구인 이의신청자의 말씀이 있
었는데요.

언론보도의 내용은 일부 적어주시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고, 또 하나
는 언론은 어떤 경로로 이 내용들을 파악하게 돼서 보도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
리겠습니다.

○ 000 주무관

일단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언론보도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종교활동, 그러니까 예배를 강요하고
직원들한테 헌금을 강요한다는 내용이 보도됐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 000 위원

예를 들면 저희 감사위원회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지요?

○ 000 주무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아마 언론이 제보를 받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는 이 내용을 수사 중에 있는 것인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수사 중인 상태로 서울시로 관련 조사결과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완료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 000 주무관

현재 계속 수사 진행 중입니다.

○ 000 위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서 요청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분공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요청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000 주무관

동일하게 이 건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될 것입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없으면,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지금 답변 들으신 것처럼 현재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4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4호는 명확한 것 같고요. 1호도 같이 봐야 될까요?

○ 000 위원

이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하고 4호를 비공개 사유로 해서요.

○ 000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 1, 4호로 비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각으로 의견을 했고, 비공개 사유는 1호와 4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의원 4명 중 4명의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